

## 한국 다국적기업의 Outbound Tax Planning: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밥콕(Mitsui Babcock) 인수사례\*

정운오\*\*  
전규안\*\*\*

발전기(Generator)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두산중공업은 보일러(Boiler)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의 미쓰이밥콕(Mitsui Babcock)을 인수하고, 그 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을 토대로 터빈(Turbine) 원천기술을 보유한 체코의 스코다파워(Skoda Power)를 인수함으로써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3대 핵심설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M&A를 이루었다. 본 사례의 목적은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밥콕의 인수에서 활용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밥콕의 인수에 앞서 먼저 룩셈부르크에 유럽 내 지주회사격인 두산중공업유로피언홀딩스(Doosan Heavy Industries European Holdings, DHIEH)를 설립하였으며, DHIEH는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Doosan Power Systems Holdings)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DPSH는 DHIEH로부터의 출자금과 영국에서 일으킨 차입금을 합한 자금으로 미쓰이밥콕을 인수하였다. 이후 미쓰이밥콕에서 발생한 (법인세후) 이익이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에 배당으로 지급되면, DPSH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DPSH는 연결법인간 배당이 내부거래로 간주되는 연결납세를 선택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결납세는 DPSH가 미쓰이밥콕을 인수할 때 일으킨 차입금이자비용을 미쓰이밥콕의 이익에 손금산입되도록 함으로써 미쓰이밥콕의 법인세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후, 영국 지주회사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 배당을 과실송금 하게 되면, 이는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전이므로 영국은 이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 더욱이 룩셈부르크 세법은 자국의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DHIEH가 수령한 과실송금은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두산중공업이 인수한 미쓰이밥콕의 이익은 영국 내에서 법인세만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크의 DHIEH에 적립될 수 있었다. 만일 DHIEH가 이를 두산중공업에 배당으로 과실송금 하더라도 한국과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의해 룩셈부르크는 해당 과실송금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쓰이밥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영국법인세가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밥콕의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체코의 스코다파워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두산중공업의 아웃바운드(Outbound) 세무계획에는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EU 내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배당과 이차지급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룩셈부르크의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되었다. 정운오와 전규안(2011)이 외국투자자인 론스타가 국내에 투자하면서 채택한 인바운드(Inbound) 세무계획을 다룬 반면, 본 사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채택한 아웃바운드 세무계획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주제어: 세무계획, 연결납세, 지분면세제도, 조세조약, 이자비용손금산입

논문접수일: 2012. 06. 07.      1차 수정본 접수일: 2013. 01. 30.      게재확정일: 2013. 02. 08.

\* 본 사례연구는 BK21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음.

본 논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선영 변호사님(안진회계법인)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wjung@snu.ac.kr), 제1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kajeon@ssu.ac.kr), 교신저자

## 1. 서론

해외기업의 인수합병(해외 M&A)은 해외의 선진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시장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두드러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전략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부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sup>1)</sup>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 M&A는 2008년 말 금융위기 직후까지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09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는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에는 38건, 16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기업의 해외 M&A가 2009년에는 34건, 68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10년에는 44건, 119억 달러로 증가한 후, 2011년에는 10월 현재 36건, 112억 달러의 실

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로 해당 지역의 '알짜'기업들이 M&A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와 있으므로 한국기업들도 이 기회를 활용하면 해외 M&A를 통한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해외 M&A와 같은 해외투자를 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전략적 고려 이외에도 반드시 감안해야 할 사안이 Tax Planning이다. 이는 투자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에 외국정부의 원천과세로 인한 다중과세를 회피하고 세후투자이익을 증대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사례의 주요 목적은 두산중공업이 영국 소재 미쓰이 밥콕(Mitsui Babcock)을 인수하는 과정을 Tax Planning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해외투자의 과실 송금에 대한 조세부담을 어떻게 경감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sup>4)</sup>

본 사례와 유사한 연구로서 정운오와 전규안(2011)이 있다. 이 사례연구는 미국의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인 론스타가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거

<표 1> 국내기업에 의한 해외 M&A 현황<sup>3)</sup>

구분	2008	2009	2010	2011.10.
건수	38	34	44	36
금액(10억달러)	16.0	6.8	11.9	11.2

자료출처: 박용린과 안유미(2011)

- 1) 현해정 등(2008)을 참조함.
- 2) 국내 기업들이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과 미국 기업의 M&A(인수·합병)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M&A할 경우 대부분 중국이나 신흥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럽과 미국 브랜드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M&A라는 점에서 인수 규모나 파급 효과가 이전과 달리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의류와 식음료업체 중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거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스마트폰, 에너지 등 부문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의류나 식음료업체는 국내 업체가 세계시장에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없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와 스마트폰, 에너지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기술 판권 특허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내기업들이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M&A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 (조선일보 2011.9.30. 참조)
- 3)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국내기업의 해외 M&A 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산업이 42.5%로 가장 많으며, 금융(17.1%), 광업(12.6%), 소비재기업(8.5%) 순이었다(박용린과 안유미(2011) 참조).
- 4) 미쓰이밥콕은 현재 두산밥콕(Doosan Babcock)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본 사례는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밥콕 인수과정을 다루므로 두산밥콕 대신 미쓰이밥콕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한다.

래에서 등록세 중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얼마나 세밀한 세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천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선행 사례연구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시행한 Inbound 세무계획을 다룬 것이라면, 본 사례는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시행한 Outbound 세무계획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에 의한 해외 M&A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해외 M&A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측면에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본 사례는 Tax Planning을 강의하는 MBA과정에서 국제조세 관련 사례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제II장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영국의 미쓰이바콕을 인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제III장에서는 본 사례의 주요 논점을 기술한다. 이어서 제IV장에서는 본 사례가 세무계획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II.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바콕 인수과정

### 2.1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1962년 9월 20일에 현대양행으로 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두었다. 현대양행은 1980년에 한국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1999년 발전설비사업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사업부문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는 발전설비사업부분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발전설비의 제작·판매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위한 경쟁입찰에 두산컨소시엄이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2001년 3월 사명을 두산중공업으로 변경하였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10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주요 주주는 4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두산이다.<sup>5)</sup>

### 2.2 미쓰이바콕

미쓰이바콕은 바콕&윌콕스(Babcock & Wilcox)라는 미국 기업이 1891년 영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발한 세계적인 발전전문 원천기술업체로서 1932년에는 세계 최초로 용접보일러를 제작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95년에 일본 미쓰이(Mitsui)사에 인수되었다가, 2006년 12월 14일자로 200억 엔(약 1,600억 원)에 두산중공업으로 인수되었다.<sup>6)</sup> 미쓰이바콕은 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인 보일러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4대 기업 중 하나로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발전용 보일러 공급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며, 본사는 스코틀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인수된 이후 미쓰이바콕은 그동안 두산중공업의 약점으로 평가되어 왔던 발전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쓰이바콕은 현재 파워프로젝트 부문(신규사업)과 서비스 부문(발전소 개·보수) 등 두 개의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기술의 연수와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발전부문이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고객을 커버하는 반면, 미

5) (주)두산중공업 사업보고서(2011) 참조.

6) 인수당시 미쓰이바콕은 자산 2,418억원, 부채 2,027억원, 자본 391억원이었다.

쓰이밥콕은 유럽과 미주 등 그 밖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 2.3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밥콕 인수와 투자이익의 회수

본 사례의 관심은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밥콕의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Tax Planning을 실행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어떤 조세측면을 고려하였는지를, ① 미쓰이밥콕의 인수과정과, ② 미쓰이밥콕 이익의 과실송금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2.3.1 미쓰이밥콕의 인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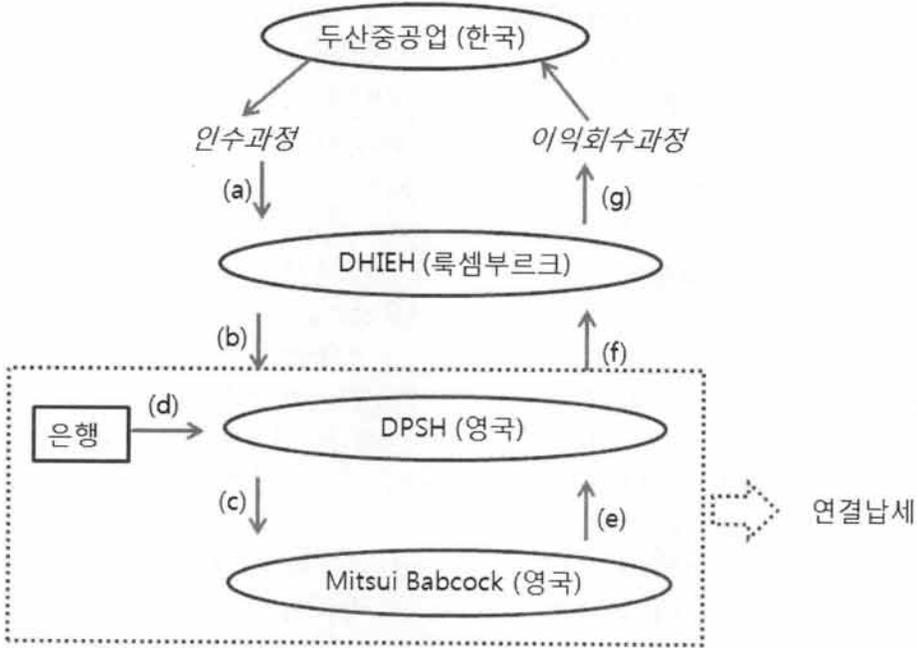
먼저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밥콕을 인수하기에 앞서 룩셈부르크에<sup>7)</sup> 유럽 지주회사격인 두산중공업유로 퍼인홀딩스(Doosan Heavy Industries European Holdings, 이하 "DHIEH"라고 함)를 100% 지분출자(Equity Financing) 형식으로 설립하였다(다음 <그림 1>의 (a)에 해당). DHIEH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100% 지분출자는 추후 DHIEH의 과실송금이 배당으로만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때에는 투자이익의 과실송금이 이자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록 지분출자 이외에 장기대여금(Debt)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기도 한다. 과실송금의 형태가 배당인 경우와 이자인 경우를 비교하면 조세 및 비조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과실송금이 배당으로 이루어지면, 배당을 수령하는 모기업은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조세혜택을 누리지만, 과실송금이 이자인 경우에는 해외법인이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통해 현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비조세측면에서 살펴보면, 배당은 과실송금의 시점(Timing)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이자의 경우는 과실송금 시점에 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가 없다.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밥콕으로부터의 이익을 과실송금 받는 대신 그 이익으로 유럽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므로, 정기적인 과실송금이 요구되는 장기대여금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물론,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임의로 낮게 책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이전가격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후 설명하겠지만, DHIEH는 룩셈부르크에서 납부할 법인세가 애초에 없으므로 장기대여금(DHIEH 입장에서는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이 법인세 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장기대여금의 이점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산중공업은 유럽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 100% 지분출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sup>8)</sup>

한편,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지주회사 DHIEH는

7) 룩셈부르크(Luxembourg)는 유럽 중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83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으며, 수도는 룩셈부르크이다. 2010년 기준으로 총인구가 50만 명에 불과한 작은 국가이지만 1인당 GDP는 90,000달러로 매우 높다. 유리한 조세환경과 기업친화적인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Goodyear, Amazon.com, eBay, PayPal, Vodafone 등 우수한 글로벌기업들이 본사 또는 유럽지사의 소재지로 룩셈부르크를 선택하고 있다. OECD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도록 촉구한데 대해 룩셈부르크는 스위스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OECD(1998)).

8) 정운오와 전규안(2011)에서 분석한 론스타의 인바운드 사례와 비교하여서도 두산중공업의 100% 지분출자는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론스타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지주회사는 론스타의 출자금에 대해 CPEC(Convertible Preferred Equity Certificate)이라는 혼합형증권(Hybrid Security)을 발행한 반면, 두산중공업이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지주회사는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에 대해 단순한 지분증권(Equity Security)을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미국세법에 따르면 CPEC은 지분증권으로 간주되어 과실송금이 배당소득이 되므로, 론스타의 미국투자자들은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룩셈부르크 세법은 CPEC을 채무증권(Debt Security)으로 간주하여 과실송금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 되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CPEC의 과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기준(K-GAAP)에 따라 과세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두산중공업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K-GAAP이 CPEC을 채무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조희 받고, CPEC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로, IFRS도 CPEC을 채무증권으로 간주한다.



〈그림 1〉 미쓰이바콕의 인수를 위한 자금흐름과 과실송금과정

두산중공업의 출자금 이외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였고,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영국 내 지주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홀딩스(Doosan Power Systems Holdings Ltd. 이하 “DPSH”라고 함)를 100% 지분출자 형식으로 설립하였다(〈그림 1〉의 (b)에 해당). 그리고 최종적으로 DPSH는 미쓰이바콕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그림 1〉의 (c)에 해당). 이때 지주회사 DPSH는 미쓰이바콕의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서 룩셈부르크 DHIEH로부터의 출자금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도 이용하였다(〈그림 1〉의 (d)에 해당). 룩셈부르크의 DHIEH가 차입을 일으킨 순수한 목적이 영국 내 DPSH의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로서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목적으로 하는 Tax Planning 과는 무관한 반면,<sup>9)</sup> 영국의 DPSH가 차입을 일으

킨 이유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영국 내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2.3.2 미쓰이바콕 투자이익의 과실송금

다음으로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이익을 두산중공업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Tax Planning을 살펴보자. 먼저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납부 후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에 배당으로 지급될 것이다. 이 때 만일 DPSH가 수령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동일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연결법인간 배당지급은 내부거래로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DPSH는 연결납세를 선택함으로써 법인세 이중과

9) DHIEH의 차입이 세무계획과 관련이 없는 이유는, 두산중공업이 DHIEH에 대해 100% 지분출자 한 배경의 설명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룩셈부르크에서는 과세되는 법인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 상술한다.

세의 문제를 회피하였다(〈그림 1〉의 (e)에 해당).<sup>10)</sup> 사실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는 연결납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회피될 수 있으므로,<sup>11)</sup> DPSH의 연결납세 선택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갖는다. DPSH는 미쓰이갑복을 인수할 때 인수자금의 일부를 차입하였으므로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데, DPSH와 미쓰이갑복이 연결됨으로써 미쓰이갑복의 이익에 대해 DPSH의 차입자가 손금산입 받게 된다. 이처럼 연결납세는 배당의 이중과세 뿐 아니라 미쓰이갑복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하는 세무전략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영국 지주회사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게 배당을 지급(과실송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이다. 원칙적으로 DPSH의 과실송금은 영국정부에 의해 원천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의 DHIEH가 수령하는 배당은 영국과 룩셈부르크 간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라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조세조약이 없더라도 해당 과실송금은 EU 내의 자금이동에 해당하므로, 영국정부가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그림 1〉의 (f)에 해당).<sup>12)</sup> 또한, 룩셈부르크의 DHIEH가 영국 DPSH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룩셈부르크 정부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배당의 지급과 수령이 EU내의 거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DPSH의 소재국(즉, 영국)이 EU

국가가 아니더라도 룩셈부르크 세법상의 지분면세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면세제도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배당이나 지분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면제(Exemption)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 룩셈부르크 법인은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지분면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배당이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참고로, 룩셈부르크에서 배당에 대해 지분면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sup>13)</sup>

- ①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주식의 취득 금액이 12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함.
- ② 12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
- ③ EU 이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요건을 만족하여야 함(Subject to Tax Requirement).

결국 두산중공업이 인수한 영국의 미쓰이갑복이 벌어들인 이익은 영국 내에서 법인세만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크의 DHIEH에 적립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단계는 룩셈부르크의 DHIEH가 배당지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과실송금 할 때의 과세문제인데, 이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원천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룩셈

10)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별개의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실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관계회사 그룹(Affiliated Group)에 대해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하여 실질적 법인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하였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67년부터 도입하였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를 75%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박정수(2009) 참조).

11) 영국에서는 영국 내 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으로 정의하여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다(김진수(2004) 참조).

12)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규정에 의해 EU 회원국 간의 배당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영국의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13) 룩셈부르크 이외에도 지분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태리, 스웨덴 등이 있다.

부르크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정부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림 1)의 (g)에 해당).<sup>14)</sup>

결과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인수한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단 한번 법인세가 부과되고, 남은 세후이익은 룩셈부르크를 거쳐 한국으로 과실송금 되지만, 이 과실송금은 영국에서도 원천과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의 과세나 원천과세 되지 않은 채 한국으로 송금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이 영국과 한국에서만 법인세가 부과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두산중공업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는 영국정부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므로 궁극적으로 미쓰이바콕의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은 단 한 번의 법인세 부담으로 국한되고,<sup>15)</sup> 이와 같이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고안된 Tax Planning은 세후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콕에 투자한 이유는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룩셈부르크의 DHIEH가 미쓰이바콕으로부터(좀더 정확히는 DPSH로부터) 받은 배당은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체코의 스코다파워(Skoda Power)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이용하였다.<sup>16)</sup>

### III. 주요 논점

본 사례의 Tax Planning에 있어서 첫 번째 주요 논점은, 왜 두산중공업이 영국의 미쓰이바콕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 지주회사(DHIEH)를 설립하고, 이어서 이 지주회사가 영국에 또 하나의 지주회사(DPSH)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미쓰이바콕을 인수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와 영국 지주회사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 3.1 룩셈부르크 DHIEH의 역할

두산중공업이 영국의 미쓰이바콕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한 이유는 미쓰이바콕의 이익을 배당 또는 이자의 형태로 한국으로 가져올 때 영국에서 직접 과실송금하게 되면 영국정부에 의해 원천과세가 되지만, 룩셈부르크를 경유하여 과실송금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sup>17)</sup> 즉, 미쓰이바콕이 자신의 이익을 영국 지주회사 DPSH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때 DPSH는 연결납세를 활용하여 법인과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EU 내 자금이전이므로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DHIEH가 두산중공업에게 배당을 과실송금 할 때에도 두 국가 간

14) 참고로, 이와 같은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으로 인해, 만일 두산중공업이 DHIEH에 100% 지분출자 대신 일부 출자금을 장기대여금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의 과실송금에 관한 원천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5) 만일 영국의 법인세율이 한국의 법인세율보다 더 높으면, 미쓰이바콕의 이익은 영국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지만, 한국의 세율이 더 높으면 한국 법인세만 부담하게 된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영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6%이고,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이므로, 미쓰이바콕의 이익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두산중공업은 최종적으로 영국 법인세만 부담하는 셈이 된다.

16) 체코의 스코다파워를 인수한 직후 두산중공업은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 아래에 두산파워시스템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쓰이바콕과 스코다파워를 두산파워시스템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17) 물론 앞에서 언급한대로 두산중공업은 DHIEH가 미쓰이바콕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과실송금 하지 않고 체코 스코다파워의 인수자금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DHIEH가 미쓰이바콕으로부터의 투자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므로 이러한 Tax Planning은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조세조약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룩셈부르크에서 한국으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에서 과세하지 않는 반면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지급되는 배당은 영국정부가 과세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바코를 직접 인수하는 대신 룩셈부르크의 지주회사를 통해 인수한 것이다(KPMG(2010) 참조).

이러한 조세목적 이외에도, DHIEH는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영국 내 지주회사 DPSH를 설립하였으므로, 이 차입금은 결국 미쓰이바코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DHIEH는 미쓰이바코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의 기능도 담당한 셈이다. 이러한 자금조달기능을 감안할 때 룩셈부르크의 DHIEH는 Tax Planning을 위한 단순 페이퍼컴퍼니라기보다는 두산중공업의 유럽 내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3.2 영국 지주회사 DPSH의 역할

본 사례에서 투자자인 두산중공업이 회피할 수 없는 조세부담은 영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영국과 한국에서의 법인세부담이다. 이 투자이익의 과실송금에 대한 원천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를 경유하지만 룩셈부르크에서는 법인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국과 한국에서의 법인세부담 중 두산중공업의 초기 관심은 영국에서의 법인세부담이었는데, 이는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코의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이를 이용하여 체코의 스코다파워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미쓰이바코의 세후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룩셈부르크의 DHIEH가 영국의 미쓰이바코에 직접 투자한다면, 영국에서 손금산입 받을 수 있는 차입이자 없으므로 그만큼 미쓰이바코의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고 세후이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DHIEH는 영국에 지주회사 DPSH를 설립하고, DPSH는 DHIEH로부터의 출자금에 더하여 차입을 일으켜 미쓰이바코를 인수하면서 차입이자를 발생시켰다. 이 차입이자는 연결납세를 통해 미쓰이바코의 이익에 손금산입 됨으로써 영국 내의 법인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영국 내 연결납세는 미쓰이바코가 자신의 이익을 DPSH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DPSH의 법인세 문제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 IV. 두산중공업의 세무전략이 주는 시사점

두산중공업의 아웃바운드(Outbound) 세무전략 사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세후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두산중공업 사례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세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4.1 룩셈부르크 조세제도의 활용

두산중공업은 룩셈부르크의 조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먼저 두산중공업은 룩셈부르크의 자국 세법에 의해 DHIEH가 한국에 배당을 과실송금 할 때 룩셈부르크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18) 그렇다면 룩셈부르크를 경유한 두산중공업의 투자과정에서 룩셈부르크 정부가 얻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일까? 룩셈부르크가 누리는 경제적 이득으로는 각종 수수료(Fee)의 수입과 고용창출효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룩셈부르크에는 법률, 회계, 경영관리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들이 발달해 있고, 이들은 DHIEH와 같은 외국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룩셈부르크의 상당수 국민들은 DHIEH와 같은 외국기업에 임직원으로 취업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DHIEH가 소재한 룩셈부르크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EU에 속하는 국가이므로, 영국의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활용하였다. 사실, DPSH의 거주지가 영국 대신 EU 이외의 국가라 하더라도, 룩셈부르크의 지분면세제도에 의해 DHIEH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 4.2 영국 조세제도의 활용

두산중공업은 영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먼저, DPSH와 미쓰이바콕이 영국소재 기업이고, DPSH가 미쓰이바콕의 지분 100%를 보유하므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미쓰이바콕이 DPSH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또 DPSH가 미쓰이바콕을 인수할 때 차입을 일으키고, 관련 차입이자에 연결납세를 통해 미쓰이바콕의 법인소득에 손금산입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 4.3 Scholes and Wolfson 패러다임에 비추어본 시사점

Scholes et al.(2009)은 세무계획의 유형을 소득의 형태(type)를 변경하는 세무계획과 소득의 귀속시기(Time Period)를 변경하는 세무계획 및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변경하는 세무계획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두산중공업 사례는 이 가운데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변경하는 유형에 속한다. 두산중공업은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DHIEH를 경유하

도록 하였다. 즉,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에 귀속될 배당소득에 대하여 먼저 룩셈부르크로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였다가 한국으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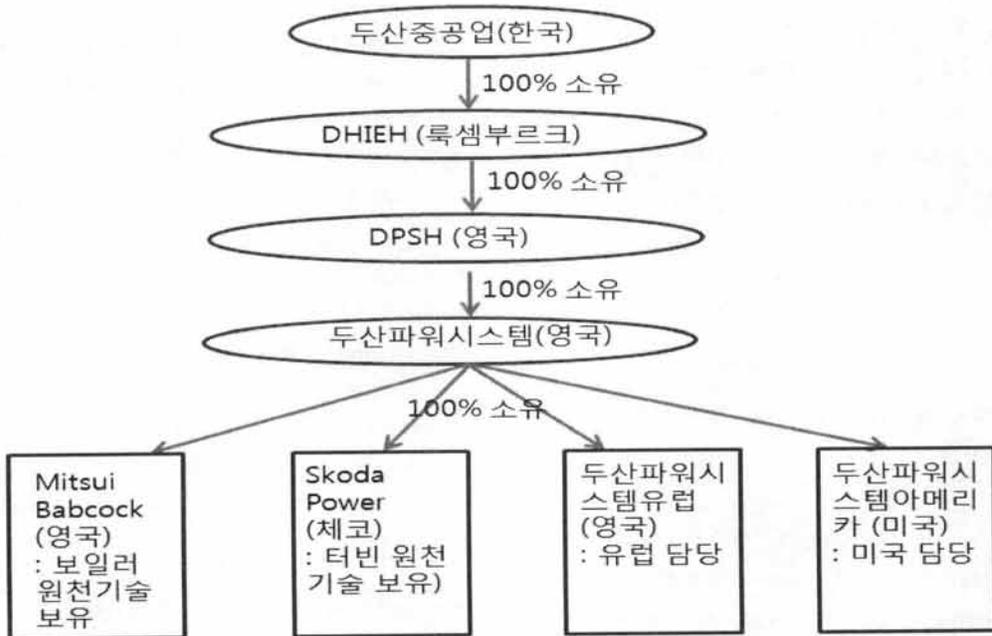
- 김진수(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박용린·안유미(2011), 세계 M&A 시장 전망과 시사점, 서울, 자본시장연구원.
- 박정수(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편,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정운오·전규안(2011),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거래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투자펀드의 세무전략," KBR 제 14권 제3호, 59-82.
- 현해정·김혁황·박철형·성한경(2008),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PMG(2010), Luxembourg Tax Opportunities for US Investors.
- OECD(1998),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 Scholes M. S., M. A. Wolfson, M. Erickson, E. L. Maydew and T. Shevlin(2009), Taxes and Business Strategy, Pearson Prentice Hall (4th ed.).

**〈부록〉 두산중공업의 유럽지역 투자현황  
(2011년 12월 31일 현재)**

두산중공업은 영국 미쓰이밥콕(현재 두산밥콕)을 인수한지 약 3년 후인 2009년 12월 7일에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의 스코다파워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었고, 이로써 두산중공업은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3대 핵심 설비(BTG)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미쓰이밥콕 및 스코다파워의 인수는 해외 M&A를 통해 기업 간 시너지가 극대화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sup>19)</sup>

2009년 체코 스코다파워의 인수로 인해 영국 미쓰이밥콕은 2010년 1월부터 체코 스코다파워와 함께 영국 소재 두산파워시스템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두산파워시스템은 영국 지주회사 DPSH의 자회사로서 영국 미쓰이밥콕과 체코 스코다파워 이외에도 두산파워시스템유럽 및 두산파워시스템아메리카 등 4개 회사를 주요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그림 2〉는 2011년 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2〉 두산중공업의 해외투자 현황

19) 두산중공업이 스코다파워를 인수하는 과정도 미쓰이밥콕의 인수과정과 대동소이하다. 즉 스코다파워의 인수 직전에 두산중공업은 체코 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지주회사는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정확히는 DHIEH의 출자금)과 현지 추가차입금을 이용하여 스코다파워를 인수하였다. 다만, 미쓰이밥콕의 인수과정과 다른 점은, 스코다파워 인수 직후 두산중공업은 체코지주회사와 스코다파워를 합병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영국과 달리 체코는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스코다파워가 연결납세를 통해 지주회사의 이자비용을 손금산입 받을 수 없으므로 합병을 통해 손금산입의 절세효과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Outbound Tax Planning of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The Case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s Acquisition of Mitsui Babcock

Woon-Oh Jung\* · Kyu-An Jeon\*\*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analyze the tax planning executed by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Doosan, henceforth) in acquiring Mitsui Babcock which operates in England. Prior to the acquisition, Doosan established in Luxemburg an European holding company named Doosan Heavy Industries European Holdings(DHIEH) by means of 100% equity financing. Subsequently DHIEH created a British holding company named Doosan Power Systems Holdings(DPSH), which in turn acquired Mitsui Babcock with the equity fund invested by Doosan(via DHIEH) and a loan raised locally in England. Afterwards, in filing its tax return, DPSH chose to consolidate Mitsui Babcock for two reasons: First, when the (after-corporate-tax) earnings and profit(E&P) of Mitsui Babcock is distributed in dividend to DPSH, it would have to pay corporate taxes on it, resulting in double taxation on Mitsui Babcock's E&P. The consolidation would allow DPSH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ecause the dividend is regarded as an internal transfer under consolidation. More importantly, the consolidation permits Mitsui Babcock to deduct the interest expenses on the loan DPSH took out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Mitsui Babcock, which reduces Mitsui Babcock's corporate tax burden. Subsequently, when DPSH repatriates E&P to DHIEH in Luxemburg, the British tax authority would not withhold taxes because the repatriation is a fund transfer in the European Union. Further, the Luxemburg tax authority would not tax the repatriation from England because the dividend a Luxemburg parent company receives from its subsidiary is not subject to taxation according to the Luxemburg tax law. Consequently, the E&P of Mitsui Babcock could be accumulated in DHIEH in Luxemburg after being taxed just once at the corporate level in England. Furthermore, if DHIEH repatriates the E&P back to Doosan in Korea,

---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it is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es in Luxemburg due to the tax treaty between the two nations. Accordingly, Mitsui Babcock's E&P could be repatriated via Luxemburg to Korea after being taxed just once in England and without further tax implications in Luxemburg. But Doosan instead utilized Mitsui Babcock's E&P in making a further acquisition of an enterprise, Skoda Power in Czech. While Jung and Jeon(2011) analyses the inbound tax planning employed by Lone Star, a private equity fund created in the U.S., this study in contrast analyzes the outbound tax planning for a Korean multi-national company.

Key Words: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 consolidation, Participation exemption, Tax treaty

〈Teaching Note〉

한국 다국적기업의 Outbound Tax Planning: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바콕(Mitsui Babcock) 인수사례

Synopsis

발전기(Generator)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㉞두산중공업은 보일러(Boiler)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의 미쓰이바콕(Mitsui Babcock)을 인수하고, 그 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을 토대로 터빈(Turbine) 원천기술을 보유한 체코의 스코다파워(Skoda Power)를 인수함으로써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3대 핵심설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M&A를 이루었다. 본 사례의 목적은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콕의 인수에서 활용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바콕 인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두산중공업은 먼저 룩셈부르크에 유럽 내 지주회사적인 두산중공업유로퍼인홀딩스(Doosan Heavy Industries European Holdings, DHIEH)를 설립하였으며, DHIEH는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 (Doosan Power Systems Holdings)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DPSH는 DHIEH로부터의 출자금과 영국에서 일으킨 차입금을 합한 자금으로 미쓰이바콕을 인수하였다.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바콕 인수과정에 이용된 조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바콕의 인수 이후에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법인세후)이익이 영국 내 지주회사인 DPSH에 배당으로 지급되면, DPSH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

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DPSH는 연결법인간 배당이 내부거래로 간주되는 연결납세를 선택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결납세는 DPSH가 미쓰이바콕을 인수할 때 일으킨 차입금이 자비용을 미쓰이바콕의 이익에 손금산입되도록 함으로써 미쓰이바콕의 법인세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후, 영국 지주회사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 배당을 과실송금 하게 되면, 이는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전이므로 영국은 이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 더욱이 룩셈부르크 세법은 자국의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DHIEH가 수령한 과실송금은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두산중공업이 인수한 미쓰이바콕의 이익은 영국 내에서 법인세만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크의 DHIEH에 적립될 수 있었다. 만일 DHIEH가 이를 두산중공업에 배당으로 과실송금 하더라도 한국과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의해 룩셈부르크는 해당 과실송금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쓰이바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영국법인세가 단 한번 과세되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바콕의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체코의 스코다파워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두산중공업의 아웃바운드(Outbound) 세무계획에는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EU 내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배당과 이자지급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룩셈부르크의 세법 및 조세조약이 활용되었다.

Scholes et al.(2009)은 세무계획의 유형을 소득의 형태(type)를 변경하는 세무계획과 소득의 귀속시기(Time Period)를 변경하는 세무계획 및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변경하는 세무계획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두산중공업 사례는 이 가운데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변경하는 유형에 속한다. 두산중공업은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DHIEH를 경유하도록 하였다. 즉,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에 귀속될 배당소득에 대하여 먼저 룩셈부르크로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였다가 한국으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정운오와 전규안(2011)이 외국투자자인 론스타가 국내에 투자하면서 채택한 인바운드(Inbound) 세무계획을 다룬 반면, 본 사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채택한 아웃바운드 세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Teaching Point

본 사례를 통해 다음을 배울 수 있다.

첫째, 본 사례는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쓰이바코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 왜 룩셈부르크와 영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조세전략이 이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본 사례는 Scholes and Wolfson의 패러다임 하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세무계획 중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변경하는 유형에 속한다. 두산중공

업은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DHIEH를 경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두산중공업에 귀속될 배당소득을 먼저 룩셈부르크로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였다가 한국으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셋째, 본 사례는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어떻게 세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외국의 글로벌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취하는 인바운드(Inbound) 세무계획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사례는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의 해외진출시의 아웃바운드(Outbound) 세무계획을 보여준다.

### Assignment Questions

1.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왜 룩셈부르크에 DHIEH를 설립하였는가를 논의하라.
2.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코를 인수할 때 영국의 어떤 조세제도를 활용하였는가를 논의하라.
3. Scholes et al.(2009)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세무계획의 형태는 소득의 형태(Type)를 바꾸는 것과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바꾸는 것 및 소득의 실현시기(Time Period)를 바꾸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바코의 인수시 이 중 어느 세무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논의하라.
4. 본 사례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룩셈부르크에 DHIEH를 설립하여 미쓰이바코를 인수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만약, 두산중공업이 룩셈부르크 이외의 다른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한다면, 어떤 국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라.

5. 룩셈부르크는 외자유치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룩셈부르크로서는 조세수입 측면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룩셈부르크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해외기업의 자금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논의하라.

## Analysis

1.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왜 룩셈부르크에 DHIEH를 설립하였는가를 논의하라.

DHIEH가 소재한 룩셈부르크가 영국과 함께 EU에 속하는 국가이므로, 영국의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으며,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자국 세법에 의해 DHIEH가 한국에 배당을 과실송금 할 때 룩셈부르크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는다. 즉, 영국의 미쓰이바콕이 두산중공업으로 직접 과실송금을 하면 영국에서 과세되는 반면에 룩셈부르크를 경유하게 되면 원천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기 두산중공업은 룩셈부르크에 DHIEH를 설립하였다.

2. 두산중공업이 미쓰이바콕을 인수할 때 영국의 어떤 조세제도를 활용하였는가를 논의하라.

두산중공업은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이자비용 손

금산입 규정을 활용하였다. DPSH와 미쓰이바콕이 영국소재 기업이고, DPSH가 미쓰이바콕의 지분 100%를 보유하므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미쓰이바콕이 DPSH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한편, DPSH가 미쓰이바콕을 인수할 때 차입을 하고, 관련 차입이자에 연결납세를 통해 미쓰이바콕의 법인소득에 손금산입 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경감시켰다.

3. Scholes et al.(2009)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세무계획의 형태는 소득의 형태(Type)를 바꾸는 것과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바꾸는 것 및 소득의 실현시기(Time Period)를 바꾸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미쓰이바콕의 인수시 이 중 어느 세무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논의하라.

본 사례는 Scholes et al.(2009)의 세무계획 유형 중 소득의 귀속처(Pocket)를 변경하는 유형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DHIEH를 경유하도록 하였다. 즉,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에 귀속될 배당소득에 대하여 먼저 룩셈부르크로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였다가 한국으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영국에서 원천과세 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지주회사 DPSH가 룩셈부르크의 DHIEH에 배당을 과실송금 하게 되면, 이는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전이므로 영국은 이에 대해 원천과세 하지 않고, 룩셈부르크 세법은 자국의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DHIEH가 수령한 과실송금은 룩셈부르크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만약 DHIEH가 두산중공업에 배당으로 과실송금 하더라도 한국과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의해 룩셈부르크는 해당 과실송금에 대해 원천과세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였다. 결국, 영국에서 법인세가 한 번 과세된 이후에는 그 이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과세되지 않고 두산중공업으로 과실송금이 되도록 하였다.

4. 본 사례에서는 룩셈부르크에 DHIEH를 설립하여 미쓰이바코를 인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만약, 두산중공업이 룩셈부르크 이외의 다른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한다면, 어떤 국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룩셈부르크의 DHIEH가 두산중공업에게 배당을 과실송금 할 때 두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원천과세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와 이러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기 때문이다.

5. 룩셈부르크는 외자유치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룩셈부르크로서는 조세수입 측면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룩셈부르크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해외기업의 자금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논의하라.

해외기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룩셈부르크가 누리는 경제적 이득은 등기세·등록세 수입과 각종 수수료 수입 및 고용창출효과이다. 실제로 룩셈부르크에는 법률, 회계, 경영관리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기업들이 발달해 있고, 룩셈부르크의 상당수 국민들은 외국기업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부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